회계학개론

※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연(年)이자율이며,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문제에서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의 답을 선택한다. 위의 조건 하에서 각 문제의 답지항 중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주)세무는 20×1년 12월 31일 개당 원가 ₩150인 제품 100개를 개당 ₩200에 현금 판매하였다. (주)세무는 판매 후 30일 이내에 고객이 반품하면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반품률은 5%로 추정되며, 반품제품 회수비용, 반품제품 가치하락 및 판매당일 반품은 없다. 동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년 인식할 매출액은 ₩19,000이다.

② 20×1년 인식할 이익은 ₩4,750이다.

③ '환불이 발생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20×1년 말 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금액은 ₩750이다.

④ 동 거래의 거래가격은 변동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⑤ 20×1년 말 인식할 부채는 ₩250이다.

2. 상품매매업을 하는 (주)세무의 20×1년 기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조 구분	종목 구분	장부 수량	실제 수량	단위당 원가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I	상품A	150개	140개	₩1,000	₩900
	상품B	180개	180개	500	450
II	상품C	200개	190개	750	650
	상품D	430개	400개	1,200	1,300

종목별기준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원가가 ₩8,000,000일 때, 조별기준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① ₩7,958,000 ② ₩7,981,000 ③ ₩8,000,000 ④ ₩8,040,000 ⑤ ₩8,043,000

3.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액면 ₩100,000(표시이자율 6%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인 전환사채를 ₩100,000에 발행하였다. 발행 당시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은 12%이다. 전환조건은 전환사채 액면 ₩800당 보통주 1주(액면 ₩500)이며, 만기일까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액면의 113.24%를 지급한다. 동 전환사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2%)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2%)
1년	0.8929	0.8929
2년	0.7972	1.6901
3년	0.7118	2.4018

① 전환사채 발행시점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은 ₩95,015이다.

② 20×1년 12월 31일 전환사채의 자본요소는 ₩4,985이다.

③ 20×2년 부채 증가금액은 ₩6,050이다.

④ 20×3년 1월 1일 전환사채 액면 ₩40,000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지면 전환권대가 ₩1,994을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20×3년 1월 1일 전환사채 전부를 ₩100,000에 상환할 경우 인식할 사채상환이익은 ₩11,452이다.

4.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3년 1월 1일에 (주)세무는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후속원가 ₩500,000을 지출하였다. 이로 인해 내용연수가 2년 연장(20×3년 1월 1일 현재 잔존내용연수 4년)되고 잔존가치는 ₩100,00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였다. (주)세무는 동 기계장치를 20×4년 1월 1일에 현금을 수령하고 처분하였으며, 처분손실은 ₩60,000이다. 기계장치 처분 시 수령한 현금은 얼마인가?

① ₩190,000 ② ₩480,000 ③ ₩540,000 ④ ₩580,000 ⑤ ₩700,000

5. (주)세무와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를 서로 교환하였다. 교환과정에서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현금 ₩20,000을 지급하였다.

구분	(주)세무	(주)한국
취득원가	₩500,000	₩350,000
감가상각누계액	220,000	20,000
공정가치	270,000	300,000

동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주)세무가 교환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300,000이다.

②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주)한국이 교환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90,000이다.

③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가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주)세무가 교환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80,000이다.

④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주)세무만 손실을 인식한다.

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주)세무와 (주)한국 모두 손실을 인식한다.

6. (주)세무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는 20×1년 초 토지와 영업용 건물을 각각 ₩100,000과 ₩10,000에 취득하였다. (주)세무는 건물에 대하여 정액법(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20×2년 초 건물에 대하여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후속원가 ₩2,000을 지출하였다. (주)세무는 유형자산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토지	건물
20×1년 말	₩95,000	₩7,000
20×2년 말	120,000	6,500

동 거래가 (주)세무의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2,000 증가 ② ₩2,500 증가 ③ ₩4,500 증가

④ ₩22,000 증가 ⑤ ₩22,500 증가

7. 20×1년 4월 1일 (주)세무는 다음의 영업용 건물을 ₩500,000에 처분하였다.

○ 취득원가: ₩2,000,000
○ 취득 시 정부보조금 수령액: ₩450,000
○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상각률 25%)
○ 잔존가치: ₩200,000
○ 20×1년 1월 1일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 기말평가: 원가모형

동 건물의 감가상각 및 처분이 (주)세무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① ₩150,000 감소 ② ₩187,500 감소 ③ ₩227,500 감소
④ ₩250,000 증가 ⑤ ₩262,500 증가

8.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에게 원가 ₩100,000의 제품을 ₩20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판매계약에는 20×1년 6월 30일 이전에 (주)한국이 요구할 경우 (주)세무가 판매한 제품을 ₩210,000에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이 포함된다. 풋옵션이 행사될 유인은 판매시점에서 유의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20×1년 6월 30일까지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권리가 소멸하였다. 동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매입일 예상 시장가치는 ₩210,000 미만이다.)

① 20×1년 1월 1일 (주)한국은 제품의 취득을 인식하지 못한다.
② 20×1년 1월 1일 (주)한국은 금융자산을 인식한다.
③ 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금융부채 ₩200,000을 인식한다.
④ 20×1년 6월 30일 (주)세무는 이자비용 ₩10,000을 인식한다.
⑤ 20×1년 6월 30일 (주)세무는 매출액 ₩200,000을 인식한다.

9. 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제품 200개를 고객에게 1년에 걸쳐 개당 ₩1,000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각 제품에 대한 통제는 한 시점에 이전된다.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동일한 제품 100개를 개당 ₩800에 고객에게 추가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동 시점까지 기존 계약 수량 200개 가운데 30개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다. 추가된 제품은 구별되는 재화에 해당하며, 추가 제품의 계약금액은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 20×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존 계약 수량 중 58개와 추가 계약 수량 중 50개의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인식할 총수익은?

① ₩100,000 ② ₩100,800 ③ ₩118,000 ④ ₩128,000 ⑤ ₩130,000

10. (주)세무는 20×1년 10월 1일 3년치 영업용 건물 관련 화재보험료 ₩1,200,000을 선급하고 전액 20×1년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동 오류는 20×2년 말 장부마감 전에 발견되어 수정되었다. (주)세무의 오류수정 회계처리가 20×2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료는 매 기간 균등하게 발생하고, 모든 오류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1,100,000 증가한다.

② 당기 비용이 ₩700,000 발생한다.

③ 기말 이익잉여금이 ₩400,000 증가한다.

④ 기말 자산항목이 ₩400,000 증가한다.

⑤ 기말 순자산이 ₩300,000 증가한다.

11.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주)한국리스로부터 기초자산A와 기초자산B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개시일은 20×1년 1월 1일로 리스기간은 3년이며, 리스료는 매년 초 지급한다. 리스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으며 (주)세무의 20×1년 초와 20×2년 초 증분차입이자율은 각각 8%와 10%이다. 리스계약은 다음의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한다.

○ 변동리스료 조건

기초자산A	리스개시일 1회차 리스료: ₩50,000 변동조건: 기초자산 사용으로 발생하는 직전 연도 수익의 1%를 매년 초 추가지급
기초자산B	리스개시일 1회차 리스료: ₩30,000 변동조건: 직전 연도 1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기초하여 2회차 리스료부터 매년 변동

○ 시점별 소비자물가지수

구분	20×0년 12월 31일	20×1년 12월 31일
소비자물가지수	120	132

20×1년 기초자산A의 사용으로 ₩200,00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리스료 변동으로 인한 20×1년 말 리스부채 증가금액은?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8%)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1년	0.9259	0.9091
2년	0.8573	0.8264
3년	0.7938	0.7513

① ₩5,527 ② ₩5,727 ③ ₩5,778 ④ ₩7,727 ⑤ ₩7,778

12. 다음은 (주)세무의 20×1년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이다.

ㅇ 20×1년 중 보통주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변동내용
1월 1일	기초유통보통주식수(액면금액 ₩5,000)는 1,000주이다.
4월 1일	자기주식 200주를 1주당 ₩8,500에 취득하다.
7월 1일	자기주식 100주를 1주당 ₩10,000에 재발행하다.
10월 1일	자기주식 100주를 소각하다.

ㅇ 20×1년 초 신주인수권 600개를 부여하였는데, 동 신주인수권 1개로 보통주 1주를 인수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8,000이고, 20×1년도 보통주 가격현황은 다음과 같다.

1월 1일 종가	1월 1일~12월 31일 평균주가	12월 31일 종가
₩7,000	₩10,000	₩12,000

20×1년도 희석주당순이익이 ₩840일 때,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① ₩840 ② ₩941 ③ ₩952 ④ ₩966 ⑤ ₩1,027

13. 중단영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처분된 경우에만 중단영업에 해당한다.

② '세후 중단영업손익'과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을 구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③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며,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다.

④ 기업의 구분단위를 매각예정으로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경우, 중단영업으로 표시하였던 당해 구분단위의 영업성과를 비교표시되는 모든 회계기간에 재분류하여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하고 과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분류되었음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평가손익은 중단영업손익에 포함한다.

14. 다음은 (주)세무의 20×1년도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ㅇ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자료
- 당기순이익: ₩500,000
- 매출채권손상차손: ₩9,00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3,500
-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
- 법인세비용: ₩60,000
- 감가상각비: ₩40,000
- 사채상환이익: ₩5,000

ㅇ 20×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

구분	20×1년 1월 1일	20×1년 12월 31일
매출채권(순액)	₩120,000	₩90,000
재고자산(순액)	80,000	97,000
매입채무	65,000	78,000
유형자산(순액)	3,000,000	2,760,000
당기법인세부채	40,000	38,000
이연법인세부채	55,000	70,000

20×1년도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단,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① ₩627,500 ② ₩640,500 ③ ₩649,500 ④ ₩687,500 ⑤ ₩877,000

15. 다음은 (주)세무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ㅇ 20×1년도 각사업연도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액은 ₩70,000이며, 20×1년 중 당기 법인세 관련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3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당기법인세자산 차변에 기입하였다. 나머지 ₩40,000은 20×2년 3월 말에 관련 세법규정을 준수하여 납부한다.

ㅇ 세무조정에 따른 유보 처분액(일시적차이)의 증감내용을 나타내는 20×1년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초잔액	당기중 증감		기말잔액
		감소	증가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90,000	₩18,000	₩13,000	₩85,000
정기예금 미수이자	△50,000		△10,000	△60,000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120,000		30,000	15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000	△5,000
합계	₩160,000	₩18,000	₩28,000	₩170,000

ㅇ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며, 20×0년 말과 20×1년 말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는 없다.

ㅇ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법인세비용은? (단, 제시된 사항 외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으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나타난 △는 (-)유보를 나타낸다.)

① ₩28,000 ② ₩36,000 ③ ₩38,000 ④ ₩68,000 ⑤ ₩102,000

16. 일반목적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당사자들(예를 들어, 감독당국)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유용하다고 여긴다면 이들도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

②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그 정보이용자들은, 예를 들어, 일반 경제적 상황 및 기대, 정치적 사건과 정치 풍토, 산업 및 기업 전망과 같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④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⑤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의사결정은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과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17.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에 공장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9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공장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년 4월 1일	20×1년 6월 1일	20×2년 2월 1일
공사대금 지출액	₩2,000,000	₩4,800,000	₩900,000

모든 차입금은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이며,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적 투자수익은 없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	20×1. 4. 1.	₩1,000,000	20×2. 9. 30.	5%
일반차입금	20×1. 1. 1.	₩1,500,000	20×3. 12. 31.	8%
일반차입금	20×1. 3. 1.	₩1,800,000	20×2. 12. 31.	12%

20×1년 공장건물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① ₩300,000 ② ₩325,000 ③ ₩337,500 ④ ₩380,000 ⑤ ₩550,000

18.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결합 과정에서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②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③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④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하며,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19. (주)세무는 20×1년 말에 취득한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12년, 잔존가치 ₩0)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였다. 20×2년 7월 1일부터 동 건물 전부를 본사사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년 7월 1일 현재 동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를 10년, 잔존가치를 ₩0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 표는 동 건물의 공정가치 변동 현황이다.

구분	20×1년 12월 31일	20×2년 7월 1일	20×2년 12월 31일
공정가치	₩1,000,000	₩1,200,000	₩1,000,000

20×2년 12월 31일 동 건물을 원가모형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750,000이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 (주)세무의 20×2년 당기순이익은?

① ₩550,000 ② ₩610,000 ③ ₩670,000 ④ ₩750,000 ⑤ ₩916,667

20. (주)세무의 20×1년 중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용 및 주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 주식기준보상 A 20×1년 4월 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100명에게 향후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1인당 주식 20주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년 말 기준 예상 가득인원은 90명이다. ○ 주식기준보상 B 20×1년 8월 1일 (주)대한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주식 200주를 지급하였다.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 주식기준보상 C 20×1년 11월 1일 (주)민국이 2개월 이내에 원재료 1톤을 공급하면 주식 300주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동 계약에 따라 (주)민국은 11월 1일에 공정가치 ₩80,000의 원재료 0.7톤을 공급하였으며, 12월 1일에 공정가치 ₩50,000의 원재료 0.3톤을 공급하여 주식 300주를 수취하였다.

일자	1주당 주가	일자	1주당 주가
4월 1일	₩300	12월 1일	₩420
8월 1일	320	12월 31일	450
11월 1일	400		

동 거래로 인한 (주)세무의 20×1년 당기손익의 영향을 제외한 당기 자본 증가금액은?

① ₩589,000 ② ₩590,800 ③ ₩599,000 ④ ₩791,500 ⑤ ₩801,500

21. (주)세무는 3년 만기 회사채A(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4% 매년 말 이자지급, 유효이자율 8%)를 20×1년 1월 1일 1매당 공정가치 ₩896,884에 발행하였다. 동 일자에 (주)세무가 발행한 회사채A를 공정가치로 1매씩 매입한 회사들의 매입 및 분류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정분류	매입수수료	회사채A 처분일
(주)대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200	-
(주)민국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00	20×3년 9월 17일
(주)한국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00	20×2년 1월 10일

20×1년 12월 31일 회사채A의 공정가치가 ₩1,000,000일 때,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총포괄이익이 큰 회사순으로 나열한 것은? (단, 모든 회사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며, 회사채A 관련 회계 처리가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제외할 때 회사채A를 매입한 세 회사의 총포괄이익은 같다.)

① (주)대한 > (주)민국 > (주)한국 ② (주)민국 > (주)대한 > (주)한국

③ (주)민국 > (주)한국 > (주)대한 ④ (주)한국 > (주)민국 > (주)대한

⑤ (주)민국 = (주)한국 > (주)대한

22.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5%(매년 말 지급), 만기 3년인 회사채를 ₩875,645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사채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은 10%이었으며,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주)세무는 20×2년 1월 1일에 동 사채의 일부를 ₩637,000에 조기상환하여, 사채상환이익이 ₩2,184 발생하였다.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사채 장부금액(순액)은?

① ₩190,906 ② ₩286,359 ③ ₩334,086 ④ ₩381,812 ⑤ ₩429,539

23. (주)세무는 (주)대한이 다음과 같이 발행한 만기 4년인 회사채를 20×1년 1월 1일에 취득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발행일: 20×1년 1월 1일
○ 액면금액: ₩1,000,000
○ 이자지급: 액면금액의 4%를 매년 말에 후급
○ 만기 및 상환방법: 20×4년 12월 31일에 전액 일시 상환
○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 8%

(주)세무는 20×1년 말에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50,000으로 추정하였다. 20×2년 말에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0×2년 말 현재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향후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만기일에 수취할 원금의 현금흐름을 ₩700,000으로 추정하였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련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1년도와 20×2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20×1년 말과 20×2년 말의 시장이자율은 각각 10%와 12%이며, 회사채 취득 시 손상은 없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12%	8%	10%	12%
1년	0.9259	0.9091	0.8929	0.9259	0.9091	0.8929
2년	0.8573	0.8264	0.7972	1.7833	1.7355	1.6901
3년	0.7938	0.7513	0.7118	2.5771	2.4869	2.4018
4년	0.7350	0.6830	0.6355	3.3121	3.1699	3.0373

20×1년	20×2년	20×1년	20×2년
① ₩19,399 증가	₩206,773 감소	② ₩19,399 증가	₩216,913 감소
③ ₩19,399 증가	₩248,843 감소	④ ₩31,834 증가	₩206,773 감소
⑤ ₩31,834 증가	₩248,843 감소		

24. 20×0년 11월 1일 (주)세무는 (주)대한리스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서버(기초자산)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기간은 20×1년 1월 1일부터 3년이며, 고정리스료는 리스개시일에 지급을 시작하여 매년 ₩500,000씩 총 3회 지급한다. 리스계약에 따라 (주)세무는 연장선택권(리스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초자산의 소유권도 리스이용자에게 귀속)을 20×3년 12월 31일에 행사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의 리스료 ₩300,000은 20×4년 1월 1일에 지급한다. 리스개시일 현재 (주)세무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은 상당히 확실하다. 20×1년 1월 1일 기초자산인 업무용 컴퓨터 서버(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가 인도되어 사용 개시되었으며, (주)세무는 리스개설과 관련된 법률비용 ₩30,000을 동 일자에 지출하였다. (주)세무의 증분차입이자율은 10%이며, 리스 관련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다. 이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1년에 인식할 이자비용과 사용권자산 상각비의 합계액은?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1년	0.9091	0.9091
2년	0.8264	1.7355
3년	0.7513	2.4869
4년	0.6830	3.1699

① ₩408,263 ② ₩433,942 ③ ₩437,942 ④ ₩457,263 ⑤ ₩481,047

25.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예로 옳은 것은?

①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②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③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④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이 중요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⑤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26. (주)세무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기초잔액	기말잔액
원재료	₩27,000	₩9,000
재공품	30,000	15,000
제 품	35,000	28,000

원재료의 제조공정 투입금액은 모두 직접재료원가이며 당기 중 매입한 원재료는 ₩83,000이다. 기초원가(prime cost)는 ₩306,000이고, 전환원가(conversion cost)의 50%가 제조간접원가이다. (주)세무의 당기제품제조원가와 당기 매출원가는?

	당기제품제조원가	매출원가
①	₩408,500	₩511,000
②	₩511,000	₩511,000
③	₩511,000	₩526,000
④	₩526,000	₩526,000
⑤	₩526,000	₩533,000

27.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재료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87,000단위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47,000단위이다. 또한 전환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35,000단위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25,000단위이다.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① 10% ② 20% ③ 25% ④ 75% ⑤ 80%

28. 다음은 (주)세무의 당기 및 전기 제조간접원가에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할 때 (주)세무의 당기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당기 지급액	당기말 잔액		전기말 잔액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공장관리비	₩250,000	₩150,000	-	₩25,000	-
수도광열비	300,000	-	₩100,000	25,000	-
복리후생비	150,000	-	100,000	-	₩35,000

① ₩615,000 ② ₩735,000 ③ ₩765,000 ④ ₩965,000 ⑤ ₩1,065,000

29. (주)세무는 고객별 수익성 분석을 위하여 판매관리비에 대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한다. 당기 초에 수집한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판매관리비 예산 ₩3,000,000(급여 ₩2,000,000, 기타 ₩1,000,000)

(2) 자원소비단위(활동)별 판매관리비 배분비율

	고객주문처리	고객관계관리	계
급여	40%	60%	100%
기타	20%	80%	100%

(3) 활동별 원가동인과 연간 활동량

활동	원가동인	활동량
고객주문처리	고객주문횟수	2,000회
고객관계관리	고객수	100명

(주)세무는 당기 중 주요 고객인 홍길동이 30회 주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길동의 주문 1회당 예상되는 (주)세무의 평균 매출액은 ₩25,000이며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60%이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여 판매관리비를 고객별로 배분하는 경우, (주)세무가 당기에 홍길동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① ₩255,000 ② ₩265,000 ③ ₩275,000 ④ ₩279,500 ⑤ ₩505,000

30. (주)세무는 결합공정에서 제품A, B, C를 생산한다. 당기에 발생된 결합원가 총액은 ₩80,000이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제품에 배분되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추가가공이 유리한 제품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결합공정 및 추가가공 과정에서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고, 생산량은 모두 판매되며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제품	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가격	생산량	추가가공원가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A	₩20	3,000단위	₩10,000	₩23
B	30	2,000단위	15,000	40
C	40	2,000단위	15,000	50

① A ② A, B ③ A, C ④ B, C ⑤ A, B, C

31.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데 단위당 변동원가는 ₩225이고 공헌이익률은 40%이다. 당기 예상 판매량은 2,000단위부터 6,000단위 사이에서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이룬다. 당기 총고정원가가 ₩630,000일 때 ₩120,000 이상의 이익을 얻을 확률은?

① 25% ② 45% ③ 55% ④ 60% ⑤ 75%

32.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단위당 ₩150에 판매한다. 연간 생산가능 수량 2,000단위에 근거한 제품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	₩10
직접노무원가	15
단위수준 활동원가	25
제품수준 활동원가	14
설비수준 활동원가	6
	₩70

위 원가 항목 중 제품수준 활동원가와 설비수준 활동원가는 고정원가로, 나머지는 변동원가로 가정한다. 총고정원가 중 ₩10,000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회사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이다. 세후순이익 ₩16,000을 얻기 위한 제품 판매수량은?

① 460단위 ② 520단위 ③ 550단위 ④ 600단위 ⑤ 625단위

33. (주)세무의 기초 제품수량은 없고 당기 제품 생산수량은 500단위, 기말 제품수량은 100단위이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1,300이며, 당기에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당기 영업이익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직접재료원가	₩250,000
직접노무원가	80,000
변동제조간접원가	160,000
변동판매관리비	4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40,000
고정판매관리비	15,000

① ₩13,000 ② ₩23,000 ③ ₩33,000 ④ ₩43,000 ⑤ ₩53,000

34. (주)세무는 제품A와 제품B를 생산·판매한다. 각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제품A는 ₩200, 제품B는 ₩150이며, 공헌이익률은 제품A는 40%, 제품B는 50%이다. 제품A와 제품B의 매출수량배합은 1:2로 일정하고, 당기 총고정원가는 ₩34,500이다. 당기 이익 ₩23,000을 얻기 위한 총매출액은?

① ₩120,000 ② ₩125,000 ③ ₩128,000 ④ ₩132,000 ⑤ ₩138,000

35. (주)세무의 최대생산능력은 5,000개이다. 정규시장에 1개당 ₩200에 4,000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번에 50개씩 묶음(batch) 생산하며, 4,000개를 생산하는 경우 원가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	₩240,000
묶음수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	80,000
고정원가	400,000
	₩720,000

1개당 ₩130에 1,500개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특별주문에 대해서는 100개씩 묶음 생산하며, 특별주문은 전량을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주)세무의 이익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① ₩75,000 증가 ② ₩30,000 증가 ③ ₩20,000 증가
④ ₩20,000 감소 ⑤ ₩75,000 감소

36.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계작업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기준조업도 기계작업시간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실제 제품 생산량 : 700단위
- 제품 단위당 표준기계작업시간 : 2시간
- 실제발생 고정제조간접원가 : ₩12,000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 : ₩2,000(불리)
-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 ₩4,000(유리)

① 600 ② 800 ③ 1,000 ④ 1,200 ⑤ 1,400

37. (주)세무는 당기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 표준원가 : 3kg×₩10/kg=₩30
- 직접재료 kg당 실제 구입가격 : ₩12
- 직접재료 구입가격차이 : ₩12,600(불리)
- 직접재료 능률차이 : ₩4,000(유리)

당기 실제 제품 생산량이 2,000단위일 때 기말 직접재료 재고량은? (단, 기말 재공품은 없다.)

① 300kg ② 400kg ③ 500kg ④ 600kg ⑤ 700kg

38. (주)세무의 품질관리 활동원가는 다음과 같다. 품질관리 활동원가 중 예방원가(prevention cost)와 평가원가(appraisal cost)의 계산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활동	원가(또는 비용)
원재료 검사	₩40
반품 재작업	10
재공품 검사	50
납품업체 평가	90
공손품 재작업	10

활동	원가(또는 비용)
설계엔지니어링	₩20
보증수리원가	70
예방적 설비유지	30
반품 재검사	20
품질교육훈련	60

①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110 더 크다.

②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90 더 크다.

③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50 더 작다.

④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70 더 작다.

⑤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90 더 작다.

39. (주)세무는 이익중심점으로 지정된 A, B 두 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A사업부는 부품을 생산하고, B사업부는 부품을 추가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A사업부의 부품 최대생산능력은 5,000단위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100이다. A사업부는 부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을 ₩200으로 책정하여 외부에 3,000단위 판매하거나 단위당 판매가격을 ₩180으로 책정하여 외부에 4,000단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A사업부가 외부시장에서 2가지 판매가격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B사업부가 A사업부에게 부품 2,000단위를 내부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0단위를 전량 대체하는 경우 A사업부의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① ₩80 ② ₩100 ③ ₩110 ④ ₩120 ⑤ ₩180

40. (주)세무는 공정이 정상인지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공정 조사비용은 ₩20,000이며, 조사 후 공정이 비정상 상태일 때 교정비용은 ₩30,000이다. 공정이 비정상인데 조사하지 않으면 손실 ₩90,000이 발생한다. 공정이 정상일 확률은 60%, 비정상일 확률은 40%이다. 공정 상태에 대해 완전한 예측을 해주는 완전정보시스템이 있다면 그 완전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가능한 최대금액은?

① ₩4,000 ② ₩12,000 ③ ₩16,000 ④ ₩20,000 ⑤ ₩32,000

민 법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고된 후 공탁된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근로자가 공탁금 수령 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② 주식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③ 증권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하여 수익보장약정을 해준 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④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후,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⑤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학교법인의 재산인 교지, 교사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42.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②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③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④ 토지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채무자가 상계할 목적으로 부도가 난 채권자가 발행한 어음을 헐값으로 매입하여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주관적 요건이 없어도 권리남용이 인정된다.

43. 권리실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포기할 수 없는 권리도 권리 실효는 인정될 수 있다.

②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사정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라도 권리 실효가 인정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④ 권리 실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⑤ 항소권과 같이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44.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①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 ② 사용대차

③ 부담부 증여계약의 체결 ④ 무이자 소비대차

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

45.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속	ㄴ. 유증
ㄷ. 태아의 인지청구권	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46.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자신의 성년의 자와 거래하는 행위도 이해상반이 된다.

②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는 무효가 되어 본인이 적법하게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④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이해상반의 법리가 적용된다.

⑤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47.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특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② 본인의 복리상 필요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

③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⑤ 특정후견은 별도의 종료 심판 없이 기간의 종료나 정해진 사무 처리의 종결로 종료한다.

48.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자기의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 허가를 얻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④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면 그 매매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처분 시점에서 부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부재자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49.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은 단독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혼인, 협의상 이혼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미성년후견인도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재산상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0.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法院)의 재판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관습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②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고,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③ 관습법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④ 관습이 관습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종중에 관한 관습법은 양성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5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1개의 물건이 된다.

②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포락지라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③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④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인접한 필지의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이므로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⑤ 1동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1동의 건물의 일부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52. 법인의 이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②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법인의 특별대리인은 대표권이 없다.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둘 수 있다.

53. 비법인 사단인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종중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③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으나 종중원은 종중을 탈퇴할 수 있다.

⑤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방법은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

54.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이사회 전원의 결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⑤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된 이상 그것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55.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② 파산의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④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청산종결등기를 마치면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⑤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배제된다.

56. 주물·종물의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종물이 된다.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

③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은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

④ 주물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면 점유하지 않은 종물도 시효취득 한다.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였을 때 처분에는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채권적 처분도 포함된다.

57. 청산인의 직무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② 파산사무의 집행
③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④ 현존사무의 종결
⑤ 잔여재산의 인도

58.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③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④ 행위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9. 甲이 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② 甲과 乙 모두 甲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甲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③ 계약당사자가 甲과 丙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甲과 乙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乙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甲이 계약당사자로 이해될 경우에는 甲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④ 甲과 乙 모두 丙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甲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丙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⑤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甲과 乙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乙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丙이 계약당사자로 이해될 경우라도 丙이 허무인인 경우에는 甲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60.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기재되고 등기되어야만 한다.

③ 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다.

⑤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1.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매도인과 제2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③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다.

6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②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③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④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63.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에는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다.

③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개별 법령에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⑤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64.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표현대리의 법리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65.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이행의 청구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66.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③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④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6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②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③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④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68.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②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④ 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는 전득시 악의이더라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⑤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과실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69.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②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다.

③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다.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⑤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7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자(使者)가 甲에게 전달할 의사표시를 乙에게 전달한 경우 착오로 보지 않는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④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에 착오가 있었으나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한 경우, 의사표시의 취소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⑤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1.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 추인에 의해서도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형사사건에 관하여 2019년 현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7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④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⑤ 상대방의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기망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7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②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⑤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미성년의 자를 대리한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상대방이 악의가 아니면 그 효력이 있다.

74.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②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유동적 무효가 된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선의인 경우에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子가 대리권한 없이 父의 재산을 처분한 후 父를 단독상속한 경우, 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父의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만이 할 수 있다.

75.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기한에는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④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⑤ 어음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76.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매도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당사자 일방은 허가를 받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토지거래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매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협력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77. 시효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②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③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④ 시효중단사유가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78.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소멸시효기간은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③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의 단기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④ 소송에서 소멸시효에 따른 권리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른 권리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은 모두 그 기간 중 권리자가 권리를 중단하면 그 때부터 다시 기간이 진행된다.

79. 민법 제140조의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③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요건에 따라 당사자는 이를 추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 후 근로계약이 취소되면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8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의원면직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甲이 乙로 하여금 甲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甲의 내심의 의사가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경제적 효과는 乙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면, 대출계약상 甲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대리행위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그 상대방이 과실로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진다.